

제7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12. 24.(금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7-353)

-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71차 위원회(‘10. 12. 2) 보고 후, 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- ① 방송평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항목은 삭제하고,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
 - 평가항목 31개→11개, 세부 평가척도 69개→34개
 - ② <경영의 적정성>과 <자회사 평가결과 활용> 항목은 삭제하고, <재무의 건전성>과 <경영투명성 확보>항목은 통합하여 재허가 심사항목과 차별화
 - ③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영역별로 정성평가 방식 도입
 - 내용·편성 영역 : 자체심의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(정성평가)
 - 운영영역 :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(정성평가)
 - ④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신설(SO·위성·PP) 또는 강화(지상파TV)
 - ⑤ 방송사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여부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종합평가 항목 신설
 - ⑥ 기존 홈쇼핑PP의 운영영역 배점을 확대(250점→300점)하여, 홈쇼핑의 중소기업 보호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
 - ⑦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<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평가> 항목은 <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평가> 항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와 시청자 의견의 프로그램 반영결과 등을 정성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방법을 변경

2) 「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(안)」에 관한 건 - (2010-77-354)

-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‘12년말까지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「디지털전환특별법」 및 「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(‘09. 6월)」에 따라 마련된 「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(안)」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- ㉠ 시청자측면 강화
 - ① 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

- **(홍보)**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, 장애인, 농어촌 주민 등 정보접근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면대면 홍보 등 전략적 홍보 추진
- **(DTV 등 보급)** 인터넷에서만 구입 가능한 디지털 컨버터를 대형마트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중소기업 보급형 DTV 조달등록을 추진하고, 정부부처·공공기관에 디지털TV 수상기 교체 협조 요청

②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

- **(난시청 해소)** 방송사 공동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소출력동일채널중계기(50개소)와 마을 공시청설비 개선(200개소), 위성수신기 보급(13만세대) 등 추진
- **(수신환경 조사)** 디지털방송 수신율과 난시청 지역 파악을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조사(전국 1,500개 지역) 추진
- **(위성을 활용한 난시청 실험방송)** 디지털방송의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시청도 불가능한 도서·산간 지역에 대해 천리안 위성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 실험방송 추진 검토
 - ※ ETRI, 방송사 등과 협의하여 '11년에 실험방송 관련 기술적 측면 검토
- **(규제완화)** 방송보조국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
- **(초중고교 지원)** 교과부, EBS와 공동으로 영세 농어촌 지역 초·중·고교의 노후 지상파 TV수신시설에 대해 무상점검 등 추진

③ 취약계층지원 등 디지털방송 기반 확충

- **(저소득층)** 기초생활수급권자, 일부 TV수신료 면제 가구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7만 가구에 DTV 구매보조 또는 디지털컨버터 무상지원
- **(장애인)** 소득이 낮은 시각장애인, 난청노인 등에게 화면해설방송수신기(5,000개), 자막방송수신기(8,584개)를 지급

② 공급자측면 보완

- ① **(디지털보조국)**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보조국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, 용자지원 및 관세감면 등의 지원정책을 병행
- ② **(시범사업)** 제주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('11. 6. 29)

- ③ **(아날로그방송 가상종료)**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기술적 점검을 위해 전국동시 또는 지역별로 아날로그TV방송 가상종료* 추진

* 가상종료(Soft test) : 아날로그방송중단 자막을 내보내는 시험방송 형태

- ④ **(일본사례조사)** '11. 7. 24에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는 일본에 실무 조사단을 파견
 -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방송사의 대응전략 등을 파악하여 국내정책에 반영('11. 7월~8월)

3)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0-77-274)

- 항철증 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스마트폰·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, 글로벌 모바일 보안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「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안」을 원안대로 의결하되, 국제협력 방안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실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완하기로 함.

- 주요 내용(3대 추진분야 및 10대 중점과제)

① 미래 모바일 서비스·인프라 보안품질 향상

① 신규 모바일 단말 보안 강화

- 스마트폰 백신 이용 활성화 및 모바일 악성코드 점검 강화
- 신규 스마트기기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전한 앱 유통환경 조성

② 무선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

- 무선랜 보안 표준모델 개발, 보안인식 제고 및 관련 보안법제 개선 등을 통한 무선랜 보안관리 강화
- 유·무선 연동구간에 대한 침입탐지 및 대응시스템 구축

③ 신규 모바일 서비스·콘텐츠 보호

- 모바일 오피스 보안 테스트환경 구축,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 인증 체계 마련, 스마트TV 디바이스·콘텐츠 보안 솔루션 개발 지원

② 모바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

④ 모바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강화

-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수단 제공 및 관리책임 강화, 개인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 구축 등

⑤ 모바일 스팸 방지 및 최소화

- 신규 서비스의 스팸 위험성 분석 및 지능형 필터링 활용 확대

⑥ 모바일 유해정보 유통 방지

- 앱 스토어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모바일 유해정보 차단 강화

③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조성

⑦ 모바일 보안기술 연구개발(R&D) 지원 확대

- 저전력·경량암호, 단말 및 플랫폼 보호, 무선망 인프라 보호, 모바일 콘텐츠 보호 등의 핵심 원천 보안기술 개발 지원 확대

⑧ 모바일 보안 시장 생태계 조성

- 모바일 보안시장의 성장을 위한 대기업, 중소 보안업체간의 상생환경 조성
- 모바일 보안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민간 이전 및 상용화 지원 강화
- ‘모바일 보안표준 연구센터’ 설립 등을 통한 모바일 보안 분야 글로벌 표준 주도 및 핵심인재 양성 지원

⑨ 모바일 시큐리티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제고

- 모바일 분야 침해사고 예방·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
- 모바일 보안 전문 연구기관(Think-Tank) 지원 및 정보보호 문화 확산

⑩ 모바일 보안 법제 정비

- ‘(가칭)스마트 모바일 보안 법제연구회’ 구성·운영을 통해 스마트 기기, 신규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

4)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7-355)

- o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57차 위원회(10. 9. 17) 보고 후 규제 개혁위원회·법제처 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① **(피보험자 지정)**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(KAIT)’로 지정

※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공고 및 접수, 보험금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

- ② **(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)** 선불통화 사업자의 자산규모, 선불통화 발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%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기준 마련

<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 >

| 보험가입금 산정조건 | | 당해연도 보험가입금액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전년도 순자산 규모 | 선불통화 발행 예정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매출액 | |
| 30억원 이상 | 10% 미만 |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% 이상 |
| | 10%~30% |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 |
| | 30% 초과 |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 |
| 30억원 미만 | 10% 미만 |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 |
| | 10%~30% |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80% 이상 |
| | 30% 초과 |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 |

- ③ **(보험금 배분 및 지급 절차)** 이용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피해보상 공고, 이용자의 보상 신청, 보험금 배분 및 지급 절차를 규정
- ④ **(자료제출 항목 신설)**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(안)에 규정되어 있던 ‘사업자의 자료 제출’ 항목을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,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고시에 규정
- 사업자의 전년도 대차대조표, 전년도 선불통화서비스 매출액,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 구체적 자료제출 항목을 규정

사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12. 28(화),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35)